

숲과 국제동향

제7장 숲과 국제동향

1. 개요

2. 리우선언과 의제21

3. 기후변화협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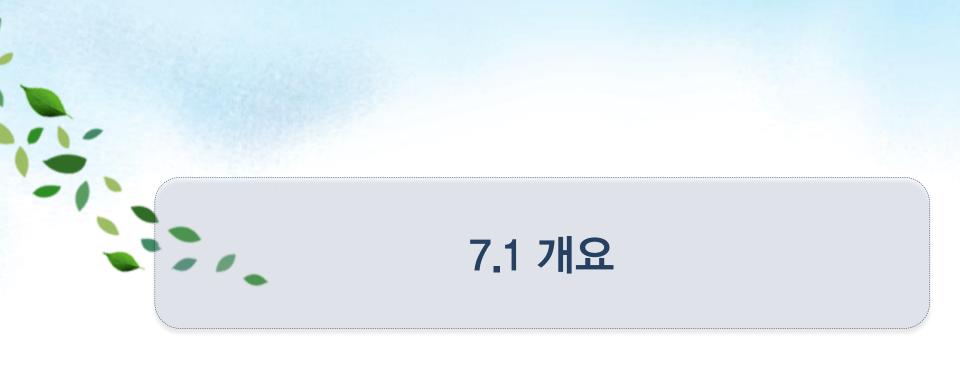
4. 생물보전관련 협약

목차

제7장 숲과 국제동향

5. 사막화방지 협약

6. 국제협약의 국가간 노력



1 개요

- 1972년, 국제연합 '인간환경회의' : 환경문제 전반에 관하여 최초로 논의
- ▮ 1982년, UNEP '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'의 설치 결정
 - '우리의 공동미래(Our Common Future) 보고서에 '지속가능한 개발' 제시
 - "현재의 개발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성을 공평하게 충족시켜야 한다."

1 개요

▮ 리우환경개발회의

- "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(ESSD)"의 구현을 위한 지구환경질서의 기본규범인 '리우선언'과 21세기를 향한 구체적 환경보전 실천계획인 '의제 21(Agenda 21)' 채택
-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'기후변화협약',
 생물자원의 보전을 위한 '생물다양성협약',
 '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산림원칙 성명' 채택

1 개요

▮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공동의 차별적 책임 강조

- 지구환경보전에 각국은 공동의 책임을 지며,
- 범세계적인 대응이 필수적
- 그러나 각 국의 현실과 능력에 맞게 책임이 차별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표명



7.2 리우선언과 의제 21

1 리우선언

- ▮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집약
- 전문과 27조 원칙으로 구성
 - 제1원칙에서 "인간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의 중심위치에 있다."로 기술(인간중심주의)
-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차 있었으나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이정표 마련
 -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통해 기존의 환경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대한 인식의 틀 제공

- 빈곤퇴치와 인간의 건강 · 보건의 증진, 산림감소대책, 생물다양성보전, 대기보전 등에 대한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행동계획
- ▮ 제11장 산림감소대책 언급
 - 산림의 다양한 역할 · 기능의 유지
 - 산림의 보호, 지속가능한 경영, 보전의 강화,
 산림의 재생, 조림, 재생수단을 통한 황폐지의 녹화
 - 산림에서 제공되는 재(材) · 서비스의 가치전체를 회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이용과 평가
 - 산림 및 관련계획의 작성과 평가능력의 확립 및 강화



7.3 기후변화협약

1 협약의 의의

- 정식명칭 : '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(UNFCCC)'
- 지구의 온난화방지를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규제와 산림 등 CO₂흡수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각국간의 협약
- 지구온난화물질인 이산화탄소(CO₂),
 염화플루오린화탄소(CFCs), 메탄(CH₂) 등의 배출량 감축

1 협약의 의의

- LCO₂ 배출기준설정, CO₂ 방출에 따른 탄소세부과, 수력, 원자력 등 비화석 연료사용,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 등
- 산림은 6,500억 톤 이상의 탄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

2 협약의 주요내용

- ▮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가 목적
- 기후변화의 예측 ·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시행하는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등이 기본원칙
- 선진국은 책임 있는 선도적 역할과 개발도상국의 특수상황 배려하되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

- ▮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공통의무사항
 - 각국은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 통계 및 국가 이행사항을 당사국 총회에 제출
 - 기후 변화 방지에 기여하는 국가정책을 수립 · 시행해야 하고,
 이를 당사국 총회에 보고
- 협약 당시국 중 부속서 I, 부속서 II, 비부속서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

-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(38개국)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(2008~2012)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.2% 감축 규정
-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→8 ~ +10%로 차별화
- 1990년 이후의 토지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함
- 산림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탄소흡수원으로 신규조림 및 재조림, 산림전용과 산림경영 활동을 통해 흡수 또는 배출되는 양 인정

3 교토의정서

▮ 공동이행제도(JI)

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것

▮ 청정개발체제(CDM)

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활용

3 교토의정서

▮ 탄소배출권 거래제도(IET)

- 교토의정서에서 감축의무국가(부속서 Ⅱ)가 의무감축량을
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, 초과분을 다른 감축의무 국가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
-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,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음



7.4 생물보전 관련협약

● 협약의 의의

- 희소종의 거래 규제, 특정 지역의 생물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국제조약 (워싱턴조약, 국제습지 조약 등)을 보완
- 생물의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골조 마련
- 지구상의 생물종(Species)의 다양성,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(Ecosystem)의 다양성, 생물이 지닌 유전자(Gene)의 다양성

- 협약의 내용
 - 가입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의무와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가입국 간 협력부분으로 구분
 - ▮ 가입국의 국내적 의무
 -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
 -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및 감시
 - 보호지역의 설정 등 현지 내 보전조치
 - 종자은행 설립 등 현지 외 보전조치의 시행
 -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

● 협약의 내용

- ▮ 가입국 간 협력사항
 - 타국보유 유전자원의 접근 시 해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는 제도의 도입
 - 생명공학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기술을 다른 가입국에게 이전 촉진
 - 생명공학에 기인한 변형된 생물체(유전자변형 생물체)의 안전한 이전 · 취급 · 사용에 대하여 사전통고 등 절차를 명시한 의정서 채택의 필요성
 - 개발도상국의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대한 재원 제공 등에 관한 내용

- 나고야의정서
 - ▮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의정서
 -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
 - ▮ 생물자원 주권확보 강화가 배경
 - 지구의 생물종의 감소와 생태계 파괴의 가속화에 따른 생물 다양성의 보전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 의의

2 람사르협약

- ▮ 1971년 2월 이란의 해안도시 람사(Ramsar)에서 채택
-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태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여 물새 서식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가입국 간 협력사항
- 생태 · 사회 · 경제 · 문화적으로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습지를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유도하여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

2 람사르협약

우리나라 람사르협약 습지









- ▮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· 식물종을 보호하기 위하여, 야생동 · 식물 수출입 국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 규제
- ▮ 서식지로부터의 무분별한 채취 및 포획을 억제 (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채택)
- ▮ 규제대상 동식물의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Ⅰ.Ⅱ.Ⅲ으로 구분
- ▮ 수출입시 지정된 관리당국에서 허가 받도록 규정

3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협약(CITES)

구분	부속서Ⅰ	부속서Ⅱ	부속서표
분 류 기 준	멸종 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 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	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국제 거래 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 으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	협약 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 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하 여 다른 협약 당사국의 협 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여 지정한 종
규 제 내 용	상업 목적의 국제거래는 금지(학술 연구 목적의 거래 만 가능)	상업·학술·연구 목적의 국제 거래 가능	상업·학술·연구 목적의 국제 거래 가능
구 비 문 서	거래 시 수출·입국의 양 국 정부에서 발행되는 수 출입 승인서 필요	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 허가서 필요	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 허가서 및 원산지 증 명서 필요
주 요 대상종	호랑이, 고릴라, 밍크고래, 따오기 등	하마, 강거북, 황제전갈, 오엽인삼 등	바다코끼리(캐나다), 북방살모사(인도) 등



7.5 사막화방지협약

1 협약의 의의

-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(특히 아프리카 지역국가)들에 대한 재정적 · 기술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체계 수립
- Ⅰ 기본원칙으로 사막화 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입안과 시행에 관한 결정이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

2 협약의 주요 내용

- 선진국 · 개발도상국 공통 의무사항
 - 양 · 다자 협정을 통한 사막화 방지 장기전략 수립
 - 빈곤퇴치전략과 사막화 방지사업 연계
 - 재원동원을 위하여 기존 양 · 다자간 재정체계 및 협정의 활용 장려
- ▮ 선진국 의무사항
 - 피해국, 특히 아프리카 국가와 최빈국의 사막화 방지 활동 지원
 - 실질적 규모의 자금 및 기타 행태의 원조 제공



7.6 국제협약의 국가간 노력

1 생물다양성과학기구(IPBES)

-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동향을 과학적으로 평가(assesment)하고, 과학과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정부 간 기구
-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의 광범위하고 급격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, 국가 및 국제 정책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
- 생물 다양성의 보전, 지속 가능한 이용과 발전, 장기적 인류복지를 위하여 과학과 정책 간의 상호연계(Interface)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설립

1 생물다양성과학기구(IPBES)

- 제1~3차 총회 :
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현황, 변화 추이에 대한 평가와
 관련 정책제안 등을 담을 2014~2018 IPBES 평가계획이 결정되어
 현재 관련 작업이 진행 중
- 제4차 총회 :2014~2018 IPBES 평가계획의 첫 번째 평가보고서에 식량 생산에 관한 수분 및 수분매개체 평가와 시나리오 및 모델의 방법론 평가서가 채택
- 전 세계 식량생산을 위한 수분 및 수분매개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, 서식지 보호, 농약사용 제한 등의 정책대안 제안

2 산림분야의 공적개발원조(산림ODA)

- 공적개발원조(ODA) :
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
- 산림 ODA :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산림보전 및 지속 가능한 경영 등을 위해 산림부문에 제공하는 양허성 자금
- 산림 ODA 공여는 일본, 독일, EU 등 9개국이 총 산림 ODA 자금의 95% 정도 제공
- ▶ 노르웨이, 일본이 집행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,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은 수준

2 산림분야의 공적개발원조(산림ODA)

- 산림 ODA 내용 : 산림정책 및 행정관리, 산림개발, 산림연구, 연료재 및 목탄, 산림교육 및 연수, 산림 서비스 부문 등
- ▮ 산림정책 및 행정관리 부문과 산림개발이 대부분 차지
- ▶ 우리나라도 산림개발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(몽골, 중국, 인도네시아)
- 우리나라 산림 ODA 시행기관 중 KOICA의 지원이 가장 많고, 다음 산림청(조림, 양묘)
- 현재 중점 추진 양자협력사업 :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, 한-인니 산림협력사업

다음시간 안내

9강. 숲의 보전(1)